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96
----------	-----

제출년월일: 2024. 5.  
제출자: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변경계획은

가) 건물 취득 : 1건, 1동, 430.7㎡, 1,350,000천원

1)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 1동, 430.7㎡, 1,350,000천원

## 3. 붙임자료

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나. 2024년 제3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나]

## 2024년도 제3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건물취득 합계(1건, 1동)			430.7	1,350,000			
1	대	진부면 하진부리 265-3 외 10필지	430.7	1,350,000	2024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붙임 다]

##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업명	부서	쪽
1.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건설과	6

- 겨울철 강설시 제설제 하역 및 적재의 실내작업, 제설제의 실내보관으로 제설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간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사업개요

- 위치 : 진부면 하진부리 265-3 외 10필지
- 사업기간 : 2024. 7. ~ 12.
- 사업량 : 지상 1층(연면적 430.7m<sup>2</sup>)
- 사업내용 : 제설창고 367.2m<sup>2</sup>, 부속동 63.5m<sup>2</sup>
- 사업비 : 1,350백만원(군비)

## □ 검토사항(필요성)

- 2022년 강원도 감사시 지적된 도로 제설제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제설자재 실내보관을 위한 제설창고를 설치하여 제설제 하역 및 적재 실내작업, 제설제의 실내보관으로 제설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간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성 있음.

##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m<sup>2</sup>,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축 연면적	용도 (구조)	예정가격	취득시기
진부면 하진부리	265-3외 10필지	대	9,205	430.7	제설창고 (철골조)	1,350,000,000	2024년 (하반기)

##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실시 : 2022. 11. 23. ~ 12. 2.
- 실시설계 착수 ~ 완료 : 2023. 10. 4. ~ 2024. 5. 10.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4. 5.
- 하진부 제설창고 신축 : 2024. 7. ~ 12.

# □ 하진부 제설창고

## ○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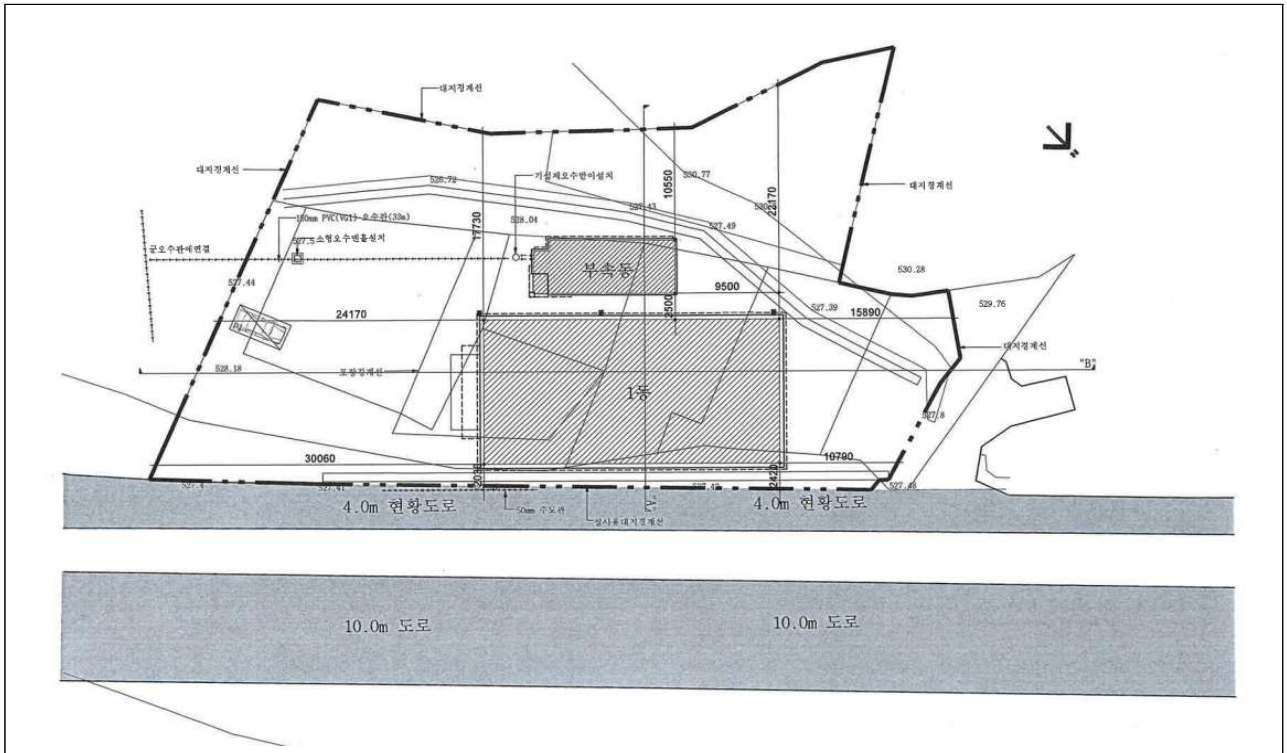


## ○ 위치도



□ 배치도

○ 하진부 제설창고



## 〈관계법령 발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 2022.12.30.>